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준하는 한국학교 무상교육 근거 신설 >  
■ 백승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313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1.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준하는 한국학교 무상교육 근거 신설 .... | 3  |
| [참고자료] .....                            | 14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백승아의원 등 16인
2. 발 의 일 : 2026. 4. 14.
3. 회 부 일 : 2026. 4. 15.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자 미래임.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자녀들이 세계 어디에 살고 있든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임. 이에 정부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마다 교민 간담회 등에서 재외동포 교육 지원 확대를 약속해 왔음.

현재 전 세계 16개국 34개 교육부 소관 재외한국학교에서는 약 1만 3천여 명의 학생들이 매우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지키며 학업을 이어가고 있음.

국회와 정부는 현행법을 제정하여 재외국민 교육 지원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그러나 많은 한국학교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일부 학교는 학생 수 증가로 인한 교실 부족과 학교 건물 증·개축 수요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교육 여건 개선, 우수 교원 확보 등 각 학교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한국학교의 장이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학교에 지원할 수 있음. 그러나 일부 학생에 한정되어 있어 대다수 한국학교 학생들은 실질적인 교육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학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국내에서는 이미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일부 학생에 한정돼 있어 지원 확대가 필요함. 일본에서는 학비 부담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낮은 일본학교로 진학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재외 한국학교 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부터 국내 학교에 준하는 무상교육을 우선 실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자 함.

이에 국가가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준하는 한국학교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한국학교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재외 동포 사회의 미래세대 육성에 기여하며, 국가적 책무를 다하고자 함 (안 제31조의2).

### Ⅲ. 검토의견

#### 1.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준하는 한국학교 무상교육 근거 신설

#####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학교의 장이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대상을 한국학교의 학생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등학교에 준하는 한국학교의 학생으로 규정하는 한편,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초등학교에 준하는 한국학교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한국학교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재외동포 사회의 미래세대 육성에 기여하며 국가적 책무를 다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31조의2(수업료 및 입학금의 지원) <신설> | 제31조의2(수업료 및 입학금 등의 지원) ① 국가는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

|                                                                                                                                  |                                                                                                                                                                                                                                                                 |
|----------------------------------------------------------------------------------------------------------------------------------|-----------------------------------------------------------------------------------------------------------------------------------------------------------------------------------------------------------------------------------------------------------------|
| <p>국가는 <u>학교의</u> 장이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한국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p> | <p><u>「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초등학교에 준하는 한국학교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학교에 지원하여야 한다.</u></p> <p>② ----- <u>「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등학교에 준하는 한국학교의 학생 중 학교의</u>-----<br/>-----<br/>-----<br/>-----<br/>-----<br/>-----<br/>-----.</p> |
|----------------------------------------------------------------------------------------------------------------------------------|-----------------------------------------------------------------------------------------------------------------------------------------------------------------------------------------------------------------------------------------------------------------|

## 나. 검토의견

- ☐ 한국학교는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병설·운영할 수 있음.<sup>1)</sup> 이에 근거하여 16개국에서

### 1) 「재외국민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한국학교”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12조(유치원의 병설) 한국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은 공관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학교에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을 병설·운영할 수 있다.

34개의 한국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유치원 327명, 초등학교 5,237명 등 총 1만 2,949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음.<sup>2)</sup>

### [ 한국학교 재학 현황 ]

| 구분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합계     |
|---------|-----|-------|-------|-------|--------|
| 학생 수(명) | 327 | 5,237 | 3,463 | 3,922 | 12,949 |
| 학급 수(개) | 34  | 259   | 143   | 162   | 598    |

주: 2026.4.1. 기준

자료: 교육부

□ 현행법에 규정된 한국학교 소요 비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제10조) 한국학교는 학생에게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는 (제31조) 한국학교의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와 (제31조의2) 학교의 장이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제35조) 교육부장관이 교과용 도서 등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sup>3)</sup>

2) 【참고자료 1】 재외한국학교 현황 참조

3) 「재외국민교육법」

제10조(수업료등) ① 한국학교는 학생에게 수업료·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국고지원) 국가는 재외교육기관·재외교육단체 및 학교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학교의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2.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제31조의2(수업료 및 입학금의 지원) 국가는 학교의 장이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한국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교과서 등의 제작·보급) ① 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의 교육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를 편찬·발행하거나 제작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 및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등을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과용 도서 등의 지원대상과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이러한 근거에 따라 한국학교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6년에는 585억 3,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됨.

### [ 한국학교 지원 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 운영비         |           |       | 저소득층<br>자녀학비 | 방과후학교<br>운영 지원 | 시설비 및<br>대수선비 | 교수학습<br>지원 | 합계     |
|------|-------------|-----------|-------|--------------|----------------|---------------|------------|--------|
|      | 현지채용<br>인건비 | 학교<br>운영비 | 임차료   |              |                |               |            |        |
| 2024 | 25,055      | 18,935    | 1,162 | 1,747        | 830            | 5,483         | 1,174      | 54,386 |
| 2025 | 25,552      | 16,392    | 1,266 | 1,790        | 850            | 2,109         | 1,202      | 49,161 |
| 2026 | 25,552      | 19,896    | 7,009 | 1,790        | 850            | 2,232         | 1,202      | 58,531 |

자료: 교육부

□ 그러나 한국학교에 대한 지원은 2024년 기준으로 한국학교 총지출액의 27.3% 수준으로, 국가 지원금 이외의 금액은 학부모 부담 수입 등으로 충당되고 있음.

### [ 한국학교 총지출액 대비 국고 지원 현황(2024년 기준) ]

| 국가명 | 학교명    | 학생수<br>(명)<br>(A) | 총지출액<br>(USD)<br>(B) | 등록금<br>수입총액<br>(USD)<br>(C) | 학생 1인당<br>등록금<br>(USD)<br>(C/A) | 교육부 지원금<br>(USD)<br>(D) | 총지출액 대비<br>교육부<br>지원금<br>(D/B) |
|-----|--------|-------------------|----------------------|-----------------------------|---------------------------------|-------------------------|--------------------------------|
| 일본  | 동경     | 1,400             | 9,965,376            | 2,969,947                   | 2,121                           | 2,705,934               | 27.2%                          |
|     | 교토     | 155               | 6,767,530            | 426,577                     | 2,752                           | 1,634,823               | 24.2%                          |
|     | 오사카금강  | 291               | 5,501,299            | 1,000,048                   | 3,437                           | 1,200,263               | 21.8%                          |
|     | 건국     | 402               | 8,322,906            | 680,398                     | 1,693                           | 1,913,004               | 23.0%                          |
| 중국  | 북경     | 738               | 8,554,825            | 3,160,342                   | 4,282                           | 2,454,366               | 28.7%                          |
|     | 천진     | 416               | 5,288,322            | 1,962,872                   | 4,718                           | 1,647,639               | 31.2%                          |
|     | 상해     | 869               | 11,450,829           | 4,972,453                   | 5,722                           | 2,099,834               | 18.3%                          |
|     | 무석     | 445               | 4,412,625            | 1,804,359                   | 4,055                           | 1,488,513               | 33.7%                          |
|     | 소주     | 358               | 3,795,655            | 1,630,439                   | 4,554                           | 1,085,786               | 28.6%                          |
|     | 옌타이    | 265               | 4,434,205            | 1,144,155                   | 4,318                           | 1,498,157               | 33.8%                          |
|     | 칭다오 청운 | 699               | 5,521,411            | 2,448,486                   | 3,503                           | 2,204,950               | 39.9%                          |
|     | 웨이하이   | 290               | 3,496,864            | 807,477                     | 2,784                           | 1,349,627               | 38.6%                          |
|     | 대련     | 190               | 2,852,283            | 757,801                     | 3,988                           | 1,115,554               | 39.1%                          |
|     | 선양     | 105               | 2,172,694            | 343,345                     | 3,270                           | 930,924                 | 42.8%                          |
|     | 연변     | 103               | 2,068,596            | 230,728                     | 2,240                           | 459,921                 | 22.2%                          |
|     | 광저우    | 378               | 4,807,363            | 2,075,417                   | 5,491                           | 1,109,519               | 23.1%                          |
|     | 홍콩     | 129               | 3,023,213            | 1,017,848                   | 7,890                           | 1,473,529               | 48.7%                          |
| 대만  | 타이베이   | 59                | 785,883              | 132,010                     | 2,237                           | 415,883                 | 52.9%                          |
|     | 까오슝    | 43                | 788,323              | 33,969                      | 790                             | 478,772                 | 60.7%                          |
| 베트남 | 하노이    | 2,215             | 12,868,782           | 7,198,902                   | 3,250                           | 2,064,765               | 16.0%                          |
|     | 호치민시   | 2,089             | 11,492,023           | 7,087,874                   | 3,393                           | 2,088,288               | 18.2%                          |

| 국가명   | 학교명   | 학생수<br>(명)<br>(A) | 총지출액<br>(USD)<br>(B) | 등록금<br>수입총액<br>(USD)<br>(C) | 학생 1인당<br>등록금<br>(USD)<br>(C/A) | 교육부 지원금<br>(USD)<br>(D) | 총지출액 대비<br>교육부<br>지원금<br>(D/B) |
|-------|-------|-------------------|----------------------|-----------------------------|---------------------------------|-------------------------|--------------------------------|
| 사우디   | 젯다    | 6                 | 281,671              | 18,662                      | 3,110                           | 214,764                 | 76.2%                          |
|       | 리야드   | 18                | 549,279              | 32,465                      | 1,804                           | 345,157                 | 62.8%                          |
| 싱가포르  | 싱가포르  | 335               | 10,724,901           | 4,795,221                   | 14,314                          | 1,981,343               | 18.5%                          |
| 태국    | 방콕    | 181               | 2,679,056            | 807,986                     | 4,464                           | 577,732                 | 21.6%                          |
| 필리핀   | 필리핀   | 139               | 2,296,935            | 1,098,318                   | 7,902                           | 866,197                 | 37.7%                          |
| 파라과이  | 파라과이  | 74                | 607,695              | 50,352                      | 680                             | 261,968                 | 43.1%                          |
| 아르헨티나 | 아르헨티나 | 140               | 1,120,503            | 227,227                     | 1,623                           | 481,357                 | 43.0%                          |
| 러시아   | 모스크바  | 51                | 942,926              | 144,944                     | 2,842                           | 560,584                 | 59.5%                          |
| 이란    | 테헤란   | 4                 | 752,303              | 6,200                       | 1,550                           | 258,368                 | 34.3%                          |
| 이집트   | 카이로   | 30                | 605,884              | 51,775                      | 1,726                           | 350,264                 | 57.8%                          |
|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 40                | 719,242              | 158,821                     | 3,971                           | 359,094                 | 49.9%                          |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 797               | 9,984,431            | 5,154,472                   | 6,467                           | 2,919,770               | 29.2%                          |
| 캄보디아  | 프놈펜   | 78                | 761,745              | 192,819                     | 2,472                           | 421,183                 | 55.3%                          |
| 합계    | 34개원  | 13,532            | 150,397,578          | 54,624,709                  | 4,037<br>(평균)                   | 41,017,832              | 27.3%<br>(평균)                  |

주: 2024회계연도 결산기준  
자료: 교육부

□ 이에 개정안은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지원을 규정한 현행법 제31조의2를 개정하여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초등학교에 준하는 한국학교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한국학교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재외동포 사회의 미래세대 육성에 기여하며 국가적 책무를 다하고자 함.

□ 개정안에서 무상교육의 기준이 되는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초등학교에 대한 무상교육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유아교육은 「유아교육법」에서 유치원 등에서 공통의 교육·보육

과정을 제공받는 만 3세 이상인 유아에 대해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 동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을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sup>4)</sup>

초등교육은 「대한민국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따른 의무교육에 해당하여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sup>5)</sup>

□ 「재외국민교육법」에서 유치원은 한국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학교에 병설·운영하는

#### 4)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제4항의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무상교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유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유치원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3.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고시)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부담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을 전년도 10월 말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급식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5) 「대한민국헌법」

제31조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고, 한국학교는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이므로,<sup>6)</sup>

개정안은 해당 교육에 대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국가의 책무 등을 고려하여, 「유아교육법」, 「대한민국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따른 무상교육과 동일한 수준의 무상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일부 변경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sup>7)</sup> 각 한국학교는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도 차이가 발생하므로, 무상교육을 실시하여 수업료 등을 지원할 경우 한국학교 간 지원 금액에도 편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 6) 「재외국민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한국학교”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12조(유치원의 병설) 한국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은 공관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학교에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을 병설·운영할 수 있다.

#### 7) 「재외국민교육법」

제8조(교육과정) ①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는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또는 교과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편성할 수 있다.

#### 「재외국민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교육과정 등) ① 한국학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어, 도덕,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외의 교과에 대해서는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또는 교육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② 한국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서는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또는 교육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편성할 수 있다.

□ 또한 국가의 책무 등을 고려하여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나, 재외국민은 국내국민과 조세 부담 정도에 차이가 있고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재외국민 특별전형 등을 위한 한국학교 입학 수요가 증가할 경우 재정 소요가 가중될 수 있으므로, 무상교육 실시를 통한 효과와 영향 등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제20대국회에서 한국학교의 초등교육 6년 및 중등교육 3년에 소요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가 순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sup>8)</sup>을 포함한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재외국민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1073호)이 발의되었으나,

재외국민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부분을 지원할 필요성과 함께, 한국학교마다 적용하는 교육과정이 달라 학비에 차이가 있고, 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국내국민과 재외국민의 조세 부담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무상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국내 대학의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하기 위해 한국학교를 다니는 사례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어,

한국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에 대한 내용은 현행법 제31조의2와 같이 학교의 장이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

---

8) 안 제31조의2(수업료 및 입학금의 지원) 국가는 한국학교의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에 소요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정하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신설된 바 있음.

[ 한국학교 지원 내용 비교 ]

| 구분       |    | 제20대국회 개정안<br>(안민석의원안, 2016.7.22. 발의)           | 현행<br>(2019.12.3. 개정)                             | 개정안<br>(백승아의의원안, 2026.4.14. 발의)                                                                  |
|----------|----|-------------------------------------------------|---------------------------------------------------|--------------------------------------------------------------------------------------------------|
| 의무<br>지원 | 조항 | -                                               | -                                                 | • 제31조의2제1항                                                                                      |
|          | 내용 | -                                               | -                                                 | • 국가는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학교에 <u>지원</u> 하여야 함                                  |
|          | 대상 | -                                               | -                                                 | •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u>초등학교</u> 에 <u>준하는 한국학교</u>                       |
|          | 범위 | -                                               | -                                                 | • <u>무상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등</u>                                                      |
| 재량<br>지원 | 조항 | • 제31조의2                                        | • 제31조의2                                          | • 제31조의2제2항                                                                                      |
|          | 내용 | •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u>순차적</u> 지원 가능 | •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한국학교에 지원 가능 | •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한국학교에 지원 가능                                                |
|          | 대상 | • 한국학교의 초등교육 6년 및 <u>중등교육 3년</u>                | • 학교의 장이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u>중등학교</u> 에 <u>준하는 한국학교</u> 의 학생 중, 학교의 장이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          | 범위 | •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                           | •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                             | •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                                                                            |

□ 아울러 개정안은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소요 예산 규모를 추계하여 편성하는 과정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라 국가가 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의 한국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2027년 383억 8,600만원, 2031년 358억 3,9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852억 200만원(연평균 370억 4,000만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함.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합계      | 연평균    |
|--------------------------------|--------|--------|--------|--------|--------|---------|--------|
| 무상교육에 따른 총 재정소요(A)             | 39,171 | 38,408 | 37,740 | 37,142 | 36,600 | 189,061 | 37,812 |
| 현행 제도에 따른 지원액(B) <sup>1)</sup> | 785    | 777    | 771    | 765    | 761    | 3,859   | 772    |
| 추가재정소요(C=A-B)                  | 38,386 | 37,630 | 36,970 | 36,377 | 35,839 | 185,202 | 37,040 |

- 주: 1) 현행법 제31조의2에 따라 한국학교의 장이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국가의 지원
- (대상 인원) 2025년 기준 권역별 한국학교 학생 수에 최근 3년 연평균 변화율을 적용하여 산출  
(단가) 개별 학교의 2025회계연도 교비회계 세입 결산액 중 학부모부담수입 총액을 전체 학생 수로 나누어 산출한 권역별 평균 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추계
  - 교육부 및 한국학교의 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이므로, 향후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재정소요와 상이할 수 있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2025년 연평균 환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으로, 환율 변동에 따라 실제 재정소요는 상기 수치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또한 현행법은 학생에게 수업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sup>9)</sup> 해당 조항의 내용은 국가가 수업료 등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개정안의 무상교육 내용과 상충되므로, 수업료 등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의 범위에서 무상교육 지원 대상을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한국학교 수업료, 급식비 등을 무상교육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하여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을 가지는 사립학

9) 「재외국민교육법」

제10조(수업료등) ① 한국학교는 학생에게 수업료·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교인 한국학교에 정부가 무상교육에 준하는 수업료 등을 지원할 경우, 정부 재정지원 없이 등록금 수입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내 사립학교의 반발 우려가 있고,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 국민보다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sup>10)</sup>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제18대·19대·20대 국회에서 한국학교 무상교육을 추진하였으나 정부 재정부담 가중, 대입특례 특혜시비 우려로 무상교육 지원이 아닌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으로 개정된 취지를 존중하여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충청남도 교육청, 기획예산처는 국내 거주 국민, 한국학교가 없는 지역의 재외국민 등에 대한 역차별,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따른 과도한 특혜 시비 우려가 있고, 전면 무상교육은 상당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각각 개정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일본 소재 건국한국학교는 일률적인 수업료 무상교육 지원이 아닌 시설·설비 지원과 교원 처우개선 예산 등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하다는 의견을, 오사카금강한국학교와 치바한국교육원은 무상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각각 제시하였음.

|              |
|--------------|
| 문 의 처        |
| 02)6788-5189 |

10)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현지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주채원은 현지국가에 소득세를 납부함. 다만, 재산세 등 일부 세금은 대한민국에 납부함.

## 참고 1

## 재외한국학교 현황

| 학교명             | 대한민국<br>정부 인가일 | 학생 수 (학급 수) |            |            |            |             | 전임 교원 수 |     |     |     |    |    |       |
|-----------------|----------------|-------------|------------|------------|------------|-------------|---------|-----|-----|-----|----|----|-------|
|                 |                | 유           | 초          | 중          | 고          | 계           | 유       | 초   | 중   | 고   | 교장 | 교감 | 계     |
| 동경한국학교          | '62.03.16.     |             | 697(18)    | 347(9)     | 339(9)     | 1383(36)    |         | 40  | 16  | 17  | 1  | 2  | 76    |
| 교토국제학교          | '61.05.11.     |             |            | 25(3)      | 135(9)     | 160(12)     |         |     | 6   | 17  | 1  |    | 24    |
| 오사카금강학교         | '61.02.24.     |             | 160(6)     | 73(3)      | 64(3)      | 297(12)     |         | 13  | 7   | 9   | 1  |    | 30    |
| 건국한국학교          | '76.10.01.     | 50(4)       | 130(6)     | 58(3)      | 169(9)     | 407(22)     | 10      | 12  | 10  | 17  | 1  |    | 50    |
| 소계(4개교)         |                | 50(4)       | 987(30)    | 503(18)    | 707(30)    | 2,247(82)   | 10      | 65  | 39  | 60  | 4  | 2  | 180   |
| 북경한국국제학교        | '98.08.26.     | 20(2)       | 112(6)     | 124(6)     | 164(8)     | 420(22)     | 2       | 16  | 2   | 33  | 1  | 1  | 55    |
| 천진한국국제학교        | '01.03.05.     | 13(1)       | 108(8)     | 110(6)     | 108(6)     | 339(21)     | 3       | 17  |     | 30  | 1  | 1  | 52    |
| 상해한국학교          | '99.07.06.     |             | 248(12)    | 265(11)    | 341(15)    | 854(38)     |         | 27  | 5   | 53  | 1  | 2  | 88    |
| 무석한국학교          | '08.03.01.     | 28(3)       | 146(7)     | 129(6)     | 133(6)     | 436(22)     | 3       | 13  |     | 30  | 1  | 1  | 48    |
| 소주한국학교          | '13.02.22.     | 13(1)       | 118(6)     | 124(6)     | 147(6)     | 402(19)     | 1       | 14  |     | 23  | 1  |    | 39    |
| 홍콩한국국제학교        | '88.03.01.     | 13(2)       | 61(6)      | 41(3)      | 37(3)      | 152(14)     | 4       | 6   |     | 10  | 1  | 1  | 22    |
| 엔타이한국국제학교       | '02.09.01.     |             | 79(6)      | 70(3)      | 77(5)      | 226(14)     |         | 13  |     | 19  | 1  |    | 33    |
| 칭다오청운한국학교       | '06.05.30.     | 18(2)       | 213(11)    | 236(10)    | 254(11)    | 721(34)     | 3       | 21  | 20  | 22  | 1  |    | 67    |
| 웨이하이한국학교        | '17.10.24.     |             | 127(6)     | 86(3)      | 85(3)      | 298(12)     |         | 13  |     | 16  | 1  |    | 30    |
| 대련한국국제학교        | '03.12.23.     | 5(1)        | 50(7)      | 56(3)      | 76(4)      | 187(15)     | 1       | 11  | 9   | 10  | 1  |    | 32    |
| 선양한국국제학교        | '06.07.26.     |             | 35(6)      | 38(3)      | 33(3)      | 106(12)     |         | 10  | 7   | 8   | 1  |    | 26    |
| 연변한국국제학교        | '98.02.19.     | 6(1)        | 34(6)      | 21(3)      | 24(3)      | 85(13)      | 1       | 8   | 4   | 7   | 1  |    | 21    |
| 광저우한국학교         | '14.02.07.     |             | 119(7)     | 131(5)     | 150(6)     | 400(18)     |         | 14  |     | 25  | 1  | 1  | 41    |
| 소계(13개교)        |                | 116(13)     | 1,450(94)  | 1,431(68)  | 1,629(79)  | 4,626(254)  | 18      | 183 | 47  | 286 | 13 | 7  | 554   |
| 타이베이한국학교        | '61.10.01.     | 8(1)        | 44(6)      |            |            | 52(7)       | 1       | 6   |     |     | 1  |    | 8     |
| 까오슝한국국제학교       | '61.01.28.     | 6(1)        | 24(6)      |            |            | 30(7)       | 2       | 6   |     |     | 1  |    | 9     |
| 소계(2개교)         |                | 14(2)       | 68(12)     |            |            | 82(14)      | 3       | 12  |     |     | 2  |    | 17    |
| 하노이한국국제학교       | '06.03.21.     |             | 1050(31)   | 592(17)    | 582(17)    | 2,224(65)   |         | 47  | 31  | 32  | 1  | 2  | 113   |
|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 '98.08.04.     | 40(2)       | 1034(29)   | 531(16)    | 496(15)    | 2,101(62)   | 3       | 67  | 34  | 36  | 1  | 2  | 143   |
| 소계(2개교)         |                | 40(2)       | 2,084(60)  | 1,123(33)  | 1,078(32)  | 4,325(127)  | 3       | 114 | 65  | 68  | 2  | 4  | 256   |
| 젯다한국학교          | '76.09.18.     |             | 9(2)       |            |            | 9(2)        |         | 2   |     |     | 1  |    | 3     |
| 리야드한국학교         | '79.04.24.     |             | 8(2)       |            |            | 8(2)        |         | 3   |     |     | 1  |    | 4     |
| 소계(2개교)         |                |             | 17(4)      |            |            | 17(4)       |         | 5   |     |     | 2  |    | 7     |
| 사카르타한국국제학교      | '77.04.25.     |             | 143(8)     | 214(9)     | 321(12)    | 678(29)     |         | 20  | 22  | 23  | 1  | 2  | 68    |
|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 '93.02.17.     | 26(2)       | 124(6)     | 63(3)      | 92(3)      | 305(14)     | 5       | 19  | 6   | 17  | 1  | 1  | 49    |
| 방콕한국국제학교        | '02.02.18.     |             | 91(6)      | 38(3)      | 47(3)      | 176(12)     |         | 9   | 6   | 6   | 1  | 1  | 23    |
| 필리핀한국국제학교       | '05.07.11.     | 24(2)       | 78(6)      | 42(3)      | 48(3)      | 192(14)     | 4       | 14  | 6   | 7   | 1  | 1  | 33    |
| 파라과이한국학교        | '92.03.01.     | 20(3)       | 36(6)      |            |            | 56(9)       | 2       | 6   |     |     | 1  |    | 9     |
| 아르헨티나한국학교       | '95.01.23.     | 20(2)       | 16(2)      |            |            | 36(4)       | 2       | 2   |     |     | 1  |    | 5     |
| 모스크바한국학교        | '92.02.14.     | 5(3)        | 34(6)      |            |            | 39(9)       | 1       | 6   |     |     | 1  |    | 8     |
| 테헤란한국학교         | '76.04.30.     |             | 3(2)       |            |            | 3(2)        |         | 2   |     |     | 1  |    | 3     |
| 카이로한국학교         | '80.04.15.     |             | 15(5)      |            |            | 15(5)       |         | 5   |     |     | 1  |    | 6     |
| 말레이시아한국국제학교     | '12.12.28.     | 12(1)       | 43(6)      | 29(3)      |            | 84(10)      | 1       | 6   | 5   |     | 1  |    | 13    |
| 프놈펜한국국제학교       | '18.08.27.     |             | 48(6)      | 20(3)      |            | 68(9)       |         | 6   | 5   |     | 1  |    | 12    |
| 소계(11개교)        |                | 107(13)     | 631(59)    | 406(24)    | 508(21)    | 1,652(117)  | 15      | 95  | 50  | 53  | 11 | 5  | 229   |
| 합 계(16개국, 34개교) |                | 327(34)     | 5,237(259) | 3,463(143) | 3,922(162) | 12,949(598) | 49      | 474 | 201 | 467 | 34 | 18 | 1,243 |

주: 2026.4.1. 기준

자료: 교육부